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2000. 4.19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0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3일
- 다. 상정일자 : 2000년 4월 19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가.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도 조례중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병설 및 통합학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 (안 제2조제1항 및 제4항)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법 및 시행령 조항 수정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항 삭제 (안 제21조제3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안 제2항 및 제3항)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김동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29호)이 2000년 2월 28일 개정되어
-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종전에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 앞으로는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에는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에는 9인 이상 12인 이내,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에는 13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세분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첨부서류

- 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 나. 신·구조문대비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통합 또는 병설학교의 전체학생수를 기준으로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9조제1항중 “법 제32조제10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법 제32조제1호내지 제9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호내지 제11호”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법 제32조제9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개 정 안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 영 제58제4항에서 규정한 학생수가 60명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범위에서 당해학교의 규정으로 정하고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③(생략)</p> <p>④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p>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통합 또는 병설 학교의 전체학생수를 기준으로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삭 제)</p>
<p>제9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5.(생략)</p> <p>②법 제32조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p>	<p>제9조(심의사항) ① 법 제32조제1항 제12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 1.~5.(현행과 같음)</p> <p>②법 제32조제1항제11호</p>
<p>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②(생략)</p> <p>③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②(현행과 같음)</p> <p>③(삭 제)</p>